

첨부서류	1. 신체검사서 2.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4. 사진(가로 2.5cm, 세로 3cm) 5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(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6.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(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3,000 ~ 5,000원
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유의사항

- 신체검사서는 공기총·가스발사총·마취총·산업용총 및 구멍줄발사총의 경우 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하며, 가스발사총·산업용 타정총의 경우 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.
- 총포 출처 증명서류는 입수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.
 - 기존 허가 총포의 경우는 총포 소지 허가증
 - 소지 허가 총포로서 상품화할 경우에는 총포 소지 허가증 반납증명 서류
 - 수입 또는 양도 총포의 경우에는 수입면장
 - 국내 제품인 경우에는 제조명세서
-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- 사격경기용 총포: 사격선수확인증
 - 수렵용 총포: 제1종 수렵면허증 또는 수렵면허시험 합격증
 - 유해조수구제용 총포: 제1종 수렵면허증, 제1종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
 - 그 밖의 용도에 필요한 총포: 총포의 해당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

처리절차

